

의안번호	제 2021 - 25호
보 고	2021. 12. 6.
연 월 일	(제113차 정기회의)

의 결 안 건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1. 의결 주문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다.

2. 제안 이유

양형위원회 제112차 회의에서 확정된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정 심의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이를 시행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별지와 같음

별지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1.	살인	인범죄 ········1
	가.	양형인자표1
	나.	양형인자의 정의1
	다.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3
2.	강도	E범죄 ·······3
	가.	양형인자표4
	나.	양형인자의 정의7
	다.	집행유예 기준9
3.	횡리	영·배임범죄9
	가.	양형인자표9
	나.	양형인자의 정의10
	다.	집행유예 기준12
4.	위증	중·중거인멸범죄 ·······13
	가.	양형인자표13
	나.	양형인자의 정의15
	다.	집행유예 기준16
5.	무그	고범죄17
	가.	양형인자표17
	나.	양형인자의 정의18
	다.	집행유예 기준19
6.	약취	위·유인·인신매매범죄 ···································
	가.	양형인자표20
	나.	양형인자의 정의24

	다.	집행유예 기준	26
7.	사	기범죄	27
	가.	양형인자표	27
	나.	양형인자의 정의	29
	다.	집행유예 기준	30
8.	절	도범죄	31
	가.	양형인자표	32
	나.	양형인자의 정의	34
	다.	집행유예 기준	35
9.	공	무집행방해범죄	36
	가.	양형인자표	36
	나.	양형인자의 정의	38
	다.	집행유예 기준	39
10	. 식	품·보건범죄 ····································	1 0
	가.	양형인자표	1 0
	나.	양형인자의 정의	13
	다.	집행유예 기준	14
11	. 지	식재산권범죄	1 6
	가.	양형인자표	16
	나.	양형인자의 정의	19
	다.	집행유예 기준	50
12	. 선	 거범죄 ····································	51
	가.	양형인자표	51
	나.	양형인자의 정의	53
	다.	집행유예 기준	54
13	. 빙	·화범죄 ···································	55
	가.	양형인자표	55

나. 양형인자의 정의5	8
다. 집행유예 기준6	0
14. 배임수증재범죄6	1
가. 양형인자표6	1
나. 양형인자의 정의6	2
다. 집행유예 기준6	4
15. 성매매범죄6	5
가. 양형인자표6	5
나. 양형인자의 정의6	7
다. 집행유예 기준6	8
16. 장물범죄6	9
가. 양형인자표7	0
나. 양형인자의 정의7	1
다. 집행유예 기준7	2
17. 권리행사방해범죄7	3
가. 양형인자표7	3
나. 양형인자의 정의7	5
다. 집행유예 기준7	6
18. 업무방해범죄7	8
가. 양형인자표7	8
나. 양형인자의 정의8	0
다. 집행유예 기준8	1
19. 근로기준법위반범죄8	3
가. 양형인자표8	3
나. 양형인자의 정의8	5
다. 집행유예 기준8	6
20.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7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89
다.	집행유예 기준90
21. 도	.주·범인은닉범죄 ······· 92
가.	양형인자표92
나.	양형인자의 정의93
다.	집행유예 기준 94
22. 통	・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94
가.	양형인자표94
나.	양형인자의 정의96
다.	집행유예 기준98
23. 다	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100
가.	양형인자표100
나.	양형인자의 정의101
다.	집행유예 기준102
24 . 유	·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103
가.	양형인자표103
나.	양형인자의 정의104
다.	집행유예 기준105
25. E	지털 성범죄106
가.	양형인자표106
나.	양형인자의 정의111
다.	집행유예 기준113

1. 살인범죄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増 やっ	행위	공 통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과잉방위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강함)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4유형) ●강도강간범인 경우(4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형 인 자		미 수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중한 상해
^r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u>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u> 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 은 제외) ●특정강력범죄(누범)
	행위		소극 가담피해자 유발(보통)	• 사체유기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자 /기타		 범행 후 구호 후송 상당 금액 공탁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4유형의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진지한 반성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 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 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나 피해자(살인미수범죄의 경우)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 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추가 부분]

() 9 |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1()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 요 참 작 사 유	재범의 위험성 등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이상)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중지미수 ● 피해자 유발(강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 중한 상해 ● 피해 회복 없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 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 반 참 작 사 유	재범의 위험성 등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위험한 물건 휴대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해자 유발(보통)
	기타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 강도범죄

가. 양형인자표

01 $^{-1}$ 일반적 기준

Ī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금융기관 강도
	행위자 /기타	 장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મો	행위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소극 가담 흉기 단순 휴대(2유형)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일반 양형 인자		● 상당 금액 공탁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 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절도 실형전과(집행 종 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 2</u>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금융기관 강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총기 사용(2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_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 행·협박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자 /기 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행위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소극 가담 흉기 단순 휴대(2유형) 	계획적 범행비난 동기
	행위 자 /기 타	 상당 금액 공탁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 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 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절도 실형전과(집 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행위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 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별양형인자	행위 자 /기타	 용어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 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 은 제외)

_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 가담	• 특수강도 범행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자 /기타	 범행 후 구호 후송 상당 금액 공탁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 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 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 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절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 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4 사습·누범강도

_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투 별 양 형 인 자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 한 폭행 · 협박 	 5인 이상 공동 범행 금융기관 강도 범행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상습강도) 중한 상해(누범강도) 총기 사용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인과 반기 상이 명이 집	행위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 우 소극 가담 	계획적 범행비난 동기특수강도 범행
인 자 	행위 자 /기타	상당 금액 공탁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 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 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상습강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 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 1 [|] 일반적 기준

마.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카, 상당 금액 공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 3 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추가 부분]

() 1 [|] 일반적 기준1)

마. 처벌불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¹⁾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누범강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 형의 집행유예 이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중한 상해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 란 시도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 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 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 순한 폭행·협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이상 전과 ●계획적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횡령·배임범죄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馬 題 や る	행위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 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 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Ŧ	1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 회사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 적으로 한 경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야기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 자	행위 자 <i>/</i> 기 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동종 누범
일 반 양	행위	●기본적 생계·치료비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횡령 범행인 경우
형 인 자	행위 자 <i>/</i> 기 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 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 범죄 실형전과(집행 종 료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 () 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추가 부분]

() 9 |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1()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1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 요 참	재범의 위험성 등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 회 이상 벌금)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 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 발
작 사 유	기타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 해를 야기한 경우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 족회사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 반 참 작 사 유	재범의 위험성 등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 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반복적 범행 ● 비난 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기본적 생계·치료비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가 없음 ●참작 동기 ●피고인이 고령
	기타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구분	부정적	긍정적
	한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패해 회복, 진자한 파해 회복 노력 ●상당한 피해 회복(공 탁포함)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 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4. 위증·증거인멸범죄

가. 양형인자표

01 기 위증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트 별 양 형 인	행위	 우발적 범행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 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자	행위 자 /기	용아자심신미약자수⋅자백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 인은닉, 무고 등 포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타		
일반양	행위	 미필적 고의 소극 가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 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 은 경우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경제적 대가의 약속 위증을 교사한 경우
형 인 자	행위 자 /기 타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등 포함) 합의 시도 중 피해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7	7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투 별 양 형 인	행위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 우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 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가 있는 경우 	 ●경제적 대가의 수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자	행위 자 /기 타	농아자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자수	•동종 누범(위증, 범인은 닉, 무고 등 포함)
일반양	행위	●소극 가담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 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 인 자	행위 자 /기 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 하지 않는 동종 전과(위 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추가 부분]을 추가함

[추가 부분]

()1 [|] 위증1)

차.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1 기 위증

구	IJ ~l ~l	
분	부정적	긍정적
주 요 참 작 사 유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벌금) ●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소극 가담 우발적 범행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 반 참 작 사 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위증을 교사한 경우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벌불원(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고인이 고령

¹⁾ 중거인멸·중인은닉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 요 참 작 사 유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벌금) ●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결과에영향을 미친 경우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 반 참 작 사 유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5. 무고범죄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斯 병 양 영°	행위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중한 피해결과 야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	행위	• 농아자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자	자 /기 타	● 심신미약● 자수 · 자백	인은닉, 위증 등 포함)
٥١	행위	• 소극 가담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자 /기 타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 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 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8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무고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무고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 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추가 부분]

() 8 |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9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0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중한 피해결과 야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

구분	부정적	긍정적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최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응

6.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가. 양형인자표

① 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Ť	1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트 별 양 형 인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 ●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 나(4, 5유형은 제외) 신 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인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 해서 행한 경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 행(피해자가 13세 미만 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자	행위 자 /기 타	 용이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 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 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ı	ᆫ	10000	//8 3.1.
			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 우에 한함)
0]	행위	● 소극 가담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 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2인 이상 공동 범행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자 /기 타	● 상당 금액 공탁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부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1} 약취 \cdot 유인 \cdot 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투 별 양 형 인 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경미한 상해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거나(3유형 중 피약취 · 유인 13세 미만 미성년 자 상해 등의 경우는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장애상태인 경우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인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경우 • 하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

F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i>/</i> 기 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٥ì	행위	• 소극 가담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 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2인 이상 공동 범행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자 <i>/</i> 기 타	 상당 금액 공탁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부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①3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거나(2, 3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 애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

Ŧ	7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해서 행한 경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취득한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자	행위 자 /기 타	 용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	행위	• 소극 가담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 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 범행
한 양형 인 자	행위 자 <i>/</i> 기 타	 상당 금액 공탁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부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bigcirc 4$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Ę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삐 면 면 상 정 인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 나(2유형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 사의 경우는 제외) 신체 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 태인 경우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 해서 행한 경우
자	행위 자 <i>/</i> 기 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 범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 공동범행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자 /기 타	 범행 후 구호 후송 상당 금액 공탁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부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자. 상당 금액 공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 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추가 부분]

자.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차.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거.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이상) ● 흥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휴대한 경우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약취・유인・매매・이송인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경우)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 쪽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시도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장소에 풀어 준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진지한노력포함) 또는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 ● 경미한 상해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 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구분	부정적	긍정적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우발적 범행 ●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호송 ● 상당 금액 공탁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7. 사기범죄

가. 양형인자표

()1 [|] 일반사기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소극적 범행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은 낙한 경우
행위	• 농아자	• 상습범인 경우
		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 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 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자 /기 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 반 양 평 인 자	행위	 기본적 생계·치료비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 자 /기 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퍼해 회복을 위한 진자한 노력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 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 ・배임범죄 실형전과(집 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조직적 사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 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 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를 야기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 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실 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습범인 경우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 자 /기 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퍼해 회복을 위한 진자한 노력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포함)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 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 · 배임범죄 실형전과(집 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아.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추가 부분]

아.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구분	부정적	긍정적
참작 사유	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 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 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아시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 거나, 상당 부분 피해 화복된은 경우 차별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화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피고인이 고령 ●광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 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 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최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소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8. 절도범죄

가. 양형인자표

() 1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흥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 해서 행한 경우(상습범 인 경우 제외)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행위 자 /기타	 용어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일 반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 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양형인자	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진지한 반성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는 농종 전과(집행 종료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투 별 양 형 인 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 흥기를 휴대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 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 인 경우)
	행위 자 /기 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 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자 /기 타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성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투 별 양 형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 복하여 행한 경우●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인 자			범한 경우(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 았던 경우 제외)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용하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	행위	생계형 범죄피해 경미소극 가담	● 흉기를 휴대한 경우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반양형인자	행위 자 /기타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추가 부분]을 추가함

[추가 부분]

카.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타.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반복적 범행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 피해 회복 없음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 곤란 시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생계형 범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자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사회적 유대관계 결여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	피해 경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구분	부정적	긍정적
	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 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자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9. 공무집행방해범죄

가. 양형인자표

()1 · 공무집행방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폭행 · 협박 · 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 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행위 자 /기 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동종 누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	행위	• 소극 가담	계획적 범행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자 /기 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1유형,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 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 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 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単7 増めるる。	행위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인 자	행위 자 /기타	 용어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동종 누범
일 반 양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 생한 경우
형 인 자	행위 자 /기타	•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 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 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 과(집행 종료 후 10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해 회복(공탁 포함)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 투수공무방해치사상

Ŧ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트 별 양 형 인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 입은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자	행위 자 /기타	 용어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٥ì	행위	• 소극 가담	•기본범죄가 계획적 범행 인 경우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자 /기타	 범행 후 구호 후송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 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 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추가 부분]을 추가함

[추가 부분]

차. 처벌불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

구분	부정적	긍정적
요 참 작 사 유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 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 우 ●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행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 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 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 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파해 화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 반 참 작 사 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합의 시도 중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10. 식품・보건범죄

가. 양형인자표

①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 별 양	행위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 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형 인 자		되지 못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를 입은 경우 •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 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 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 만 원 이상인 경우 •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 인 경우
	행위 자 /기 타	농아자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5년 이내 동종재범(위해 식품 판매 등 행위) 또 는 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행위	●유해 식품 등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중요 역 할을 담당하지 않고 단 순히 운반・보존・진열 행위만 한 경우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상해가 발생한 경우(상해가 중하거나,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제외) ● 의약품인 경우(1, 4, 5유형) ●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2유형)
자	행위 자/ 기타	• 적발 후 바로 폐업 ·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패해자측의 처벌불원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가 발생한 경우)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 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 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	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03 부정의료행위

Ŧ	7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투 별 양 형 인 자	행위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 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 를 입은 경우 ●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2유형)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 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 위를 한 경우
	행위 자/ 기타	농아자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일 반	행위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반 양 형 인 자	행위 자/ 기타	 환자측의 처벌불원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 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 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3 부정의료행위

마. 화자측의 처벌불위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상대방인 환자나 그 가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추가 부분]

() 2 [|] 유해 식품 · 의약품 · 화장품1)

바. 처벌불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사.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2 h 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동종 전과(10년 이내) ●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원이상 또는 의약품등의소매가격이 2,000만원이상인경우 ● 유아・어린이용식품등인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고 위험성이 매우높거나다수 피해자가상해를입은경우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수) 	 적발 후 바로 폐업 ·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파해자측의 처벌불원,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피해 화복 노력(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1) 부정의료행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 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 하는 경우는 제외)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u>() 3</u> 부정의료행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동종 전과(10년 이내) ● 2, 3유형인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 은 경우 ●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2, 3유형)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 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 를 한 경우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 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범행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가담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피해자측의 처벌불원, 상 당금액 공탁, 진지한 피해 최복 노력(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 복(공탁 포함)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 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없음 아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 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1. 지식재산권범죄

가. 양형인자표

01 등록권리침해행위

Ŧ	7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単 増 や あ	행위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수단을 사용한 경우
인 자	행위 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동종 누범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일 반	행위	●소극 가담 ●생계형 범죄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 행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피해규모가 큰 경우
양 형 인 자	행위 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상당 금액 공탁 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 저작권침해행위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 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비영리 목적 이용행위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행위 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파해 화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일 반 양	행위	●소극 가담 ●생계형 범죄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폐해규모가 큰 경우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
항 형 인 자	행위 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상당 금액 공탁 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T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빠 품º 상 영 진 차	행위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 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 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 우	초래한 경우 ●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
	행위 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 	● 동종 누범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일 반 양 형	행위	●소극 가담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 히 한 경우	 마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피해규모가 큰 경우 취득·사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인자	행위 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4 부정경쟁행위

F	7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행위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별		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양 형 인 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 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초래한 경우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행위 자 /기 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	행위	소극 가담생계형 범죄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양 형 인 자	행위 자 /기 타	 진지한 반성 파해 회복을 위한 노력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라.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추가 부분]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 ·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구분	부정적	긍정적
요 참 작 사 유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영업비밀침해행위) •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영업비밀침해행위) • 피해 미변제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 유가 있는 경우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 한 경우 ● 비영리적 목적의 범행 ● 자수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 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 반참 작 사 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피해규모가 큰 경우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탁 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2. 선거범죄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트 별 양 형 인 자	행위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 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 파성이 낮은 경우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 지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 사실공표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 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 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 은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 외)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i>/</i> 기 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자수 ●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 화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 반 양 층 인 자	행위	• 소극 가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 한 경우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 을 사용한 경우
	행위 자 /기 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진 사퇴, 불출마 선거 후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 자나 직계존 · 비속, 선 거관계인의 범행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 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포함)	이종 누범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사.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공표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발언의 취소, 게시물의 삭제, 보도의 정정 등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를 포함한다.
- 다만, 처벌불원이나 시정조치가 선거일 직전이나 선거 이후에 이루어져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추가 부분]

() 3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사. 처벌불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아.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발언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도를 정정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시정조치가 선거일 직전에 이루어져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자.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3 H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 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역해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구분	부정적	긍정적
	용하여 범행한 경우	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	
	과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 진지한 반성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피고인이 고령
일반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월만 참작 사유	용한 경우	좋지 않음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
	폐 또는 은폐 시도	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	• 선거 후 처벌불원
	는 경우는 제외)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
		함)

13. 방화범죄

가. 양형인자표

<u>() 1</u> 일반적 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트 별 양 형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 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 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 자	행위 자 /기타	 용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과해 회복된 경우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 반	행위	• 소극 가담	●계획적 범행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

Ī	7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	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 우(3유형은 제외)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
양 형 인 자	행위 자 /기타	● 산와 기다 되에 복진 장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 만)

○2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Ŧ	7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투 별 양 형 인 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1 유형)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사회적・문화적・경제적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용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실 	● 동종 누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 함)	
	행위	• 소극 가담	계획적 범행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자 <i>/</i> 기 타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퍼해 회복을 위한 진자한 노력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1유형)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미필적 살인의 고의(3유형)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 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 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 힌 경우(후자는 1유형에 한함)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 농아자	• 동종 누범

F	1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자 /기 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행위	● 소극 가담	 계획적 범행 다수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자 <i>/</i> 기 타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상당 금액 공탁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 1 [|] 일반적 기준

다.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의 미한다.

() 3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유족이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추가 부분]

() 1 ¹ 일반적 기준<mark>1</mark>)

다.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 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 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 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 산에 대한 범행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 유예 이상)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과해 회복된 경우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경미한 상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 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계획적인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매우 좋지 않음'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¹⁾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 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 하는 경우는 제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4. 배임수증재범죄

가. 양형인자표

()1 [|] 배임수재

Ť	1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 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적극적 요구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자 <i>/</i> 기 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이익 반환 퍼해자(시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또는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 	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 득액이 경미한 경우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저히 손상된 경우
	행위 자 /기 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 하지 않는 동종 전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 배임증재

Ť	1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ш <u> </u> г ;	행위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적극적 증재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별 양 형 인 자	행위 자 /기 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 반 양	행위	• 소극 가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형 인 자 	행위 자 /기 타	진지한 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 1 비임수재

나.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추가 부분]

()1 l 배임수재1)

다.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1 배임수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이의 반환 ● 파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 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일반 참작 사유	● 동종 전과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	●장기간 성실한 근무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 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¹⁾ 배임증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하는 경우는 제외)	

02 배임증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적극적 증재●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 유예 이상)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소극 가담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5. 성매매범죄

가. 양형인자표

$\left(\begin{array}{cc} 1 \end{array}\right]$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행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별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Ī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양형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증대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 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 자	행위 자 /기타	당아자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자수 또는 내부고발처벌불원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	행위	 소극 가담 요구 · 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 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
반양형인자	행위 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나.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Ŧ	7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대상 아동 · 청소년의 신 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대상 아동 · 청소년의 신 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 농아자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Ī	1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자수 또는 내부고발	
일	행위	 소극 가담 요구 · 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 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
반 양형 인 자	행위 자 /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 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 형전과(성범죄 포함, 집 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 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

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추가 부분]

나. 처벌불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반복적 범행(아동・청소 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경우 이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 매 알선행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10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 에 이른 경우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단, 19세 미만 대상 범죄는 제외)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 란 시도 ● 처벌불원(19세 이상 대상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 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점 등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강요등 유형)	●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소극 가담 ● 피고인이 고령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9세 이상 대상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유형)

16. 장물범죄

가. 양형인자표

()1 [|] 일반장물

ī	7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사유가 있는 경우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형) ●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 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과해 회복된 경우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 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Dip	행위	●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 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 닉한 경우
반 양 형 인 자	행위 자 /기 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폐 시도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 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

Ť	7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투 별 양 형 인 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 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 1항 친족 포함) 그로 인 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인경우(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 제외)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용이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 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파해 회복된 경우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의 반 양 원	행위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형 인 자 	행위 자 /기 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추가 부분]을 추가함

[추가 부분]

타. 처벌불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하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참작 사유	거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반복적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벌금)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 피해 회복 없음	유가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본범과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외의 특별한인적관계에 있고 그로인해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과해 회복된 경우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 닉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 폐 시도 ●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 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 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 하는 경우는 제외)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화복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7. 권리행사방해범죄

가. 양형인자표

ī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투 별 양 형 인 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강요행위 를 저지른 경우 ●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중 특수강요 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해한 경우에 보작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파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3유형 제외)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 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 기	행위	•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계획적인 범행
반 양 형 인 자	행위 자 /기 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Ŧ	7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 권리행사방해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黑 를 왕 왕 의 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 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	행위	소극 가담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반 양 형 인 자	행위 자 /기 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 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추가 부분]을 추가함

[추가 부분]

() 1 [|] 강요1)

아. 처벌불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1 강요

¹⁾ 권리행사방해 등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 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자수 또는 내부고발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행 후 구호 후송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 권리행사방해 등

구분	부7	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 범행수법이 경우	매우	불량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 지른 경우

구분	부정적	긍정적
사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 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 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 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 하는 경우는 제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또는 내부고발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행 후 구호 후송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8. 업무방해범죄

가. 양형인자표

()1 l 업무방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 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 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저지른 경우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행위 자 /기 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동종 누범
	행위	• 소극 가담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자 /기 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Ŧ	7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사회적·경제적 폐해가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 농아자	● 동종 누범

Ť	1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자 /기 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행위	• 소극 가담	
일 반양형인자	행위 자 <i>/</i> 기 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1 l 업무방해

라.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추가 부분]

라. 처벌불원

() 1 업무방해 <mark>1</mark>)	

- 80 -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 1 ¹ 업무방해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우

1) 경매 • 입찰방해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
	행한 경우	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
	우	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Ŷ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
	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	른 경우
	금)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
		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과	• 우발적인 범행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 진지한 반성 없음	화복
	• 계획적인 범행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
일반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함)
참작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
사유	시도	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	좋지 않음
	는 경우는 제외)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
		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u>○</u>2 경매·입찰방해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
	우	유가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주요	으로 범행한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참작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
사유	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	른 경우
	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	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구분	부정적	긍정적
	금)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과	● 진지한 반성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이
일반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이 고령
글린 참작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사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좋지 않음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
	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	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는 경우는 제외)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
		함)

19. 근로기준법위반범죄

가. 양형인자표

①1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714		7) 7) 4)	-1741
٦	7분	감경요소 : : : :	가중요소
특별 양형	행위	사유가 있는 경우 •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인자		 용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 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 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 	동종 누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반	행위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
양형 인자	앵커사 /키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 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 임금 등 미지급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馬丁 	행위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 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악의적인 미지급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 형 인 자	행위 자 /기 타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 또는 내부고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 반 양	행위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 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 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항 형 인 자	행위 자 /기 타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 하지 않는 동종 전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ī	7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라. 처벌불워(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차.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미지급액의 약 2/3 이상이 지급되거나 지급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추가 부분]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 ·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

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1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강제근로 등)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 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 금)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근로 등)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자수 또는 내부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파해 회복을 위한 전자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 (중간착취)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계획적인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구분	부정적	긍정적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좋지 않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
	시도	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는 경우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	• 진지한 반성
	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	• 상당금액 공탁 또는 피해 화
	는 경우는 제외)	복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
		함)

02 의금 등 미지급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우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자수 또는 내부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 가 있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mark>일부 피해 회복(공탁 포함)</mark>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 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20.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가. 양형인자표

() 1 기 과실치사상 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투 별 양 형 인 자	행위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 유형)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 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가 중한 경우
	행위 자 /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 	● 동종 누범
	행위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가 발생한 경우(2유형)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자 /기타	 ● 상당 금액 공탁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0</u>2 | 산업안전보건 범죄

F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투 별 양 형 인	행위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우	 안전·보건조치의무 위 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경우(다수범죄 처리기 준이 적용될 때는 제외)
자	행위 자 /기 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개시	● 동종 누범
	행위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자 <i>/</i> 기 타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다.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또는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됨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추가 부분]

다.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 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 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 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
일반 참직 사유	시도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보험 가입 ■ 상당 금액 공탁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0</u>2 산업안전보건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발생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 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

구분	부정적	긍정적
	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 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 함)]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 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보험 가입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

21. 도주ㆍ범인은닉범죄

가. 양형인자표

()1 도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투 별 양 평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손괴·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 자	행위 자 /기 타	용아자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자수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인 경우(3유형)동종 누범
일	행위	• 소극 가담	
반 양 형	행위 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 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인 자	<i>/</i> 기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2 유형) 	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 외)(2유형)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추가 부분]을 추가함

[추가 부분]

()1 [|] 도주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 ·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1 도주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 요 참 작 사 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우 ●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인 경우(3유형)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손괴·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 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2유형)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2유형)

22.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가. 양형인자표

①2 h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문서 · 통화 위 조 등 범죄 포함)
일반 양형	행위	●소극 가담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전문 위 · 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 · 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 변조된 유가증
인자	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부 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문서·통화 위조 등 범죄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 부정수표 발행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투 별 양	행위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1유형)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2유형) 	● 악의적인 미지급(수표 부도) ●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 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형 인 자	행위 자 <i>/</i> 기 타	 용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	행위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 위에 다툼이 있어 참작 할 사유가 있는 경우(수 표부도) ●소극 가담	•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당한 이득의 은폐
양형인자	행위 자 /기 타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범행 후 도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left(1 \right)^{-1}$ 통화 위조 \cdot 변조 등 / 유가증권 등 위조 \cdot 변조 등

다.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2 부정수표 발행 등

다.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각 경우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한다.
 - 확인이 가능한 공소 제기되기 이전의 수표 금액과 회수된 수표 금액까지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 부분 회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수표소지인 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 표부도)
 - 수표소지인 등을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확실한 지급 계획 등
 에 의하여 향후 확실한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추가 부분]

() 1 통화 위조·변조 등 /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1)

다. 처벌불위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

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 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 2 | 유가증권 등 위조 · 변조 등

_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간부, 전문 위 · 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 · 전 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반복적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	• 소극 가담

¹⁾ 부정수표 발행 등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한 경우	•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
	• 전문 위 · 변조범, 알선책 등	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에게 의뢰한 경우	높지 않은 경우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해 위 ·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	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
	사한 경우	적 ·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
	• 전문 위 · 변조 장비를 사용한	<u>۴</u>
참작	경우	● 일부 피해 회복
- '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없음	• 진지한 반성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 피고인이 고령
	경우는 제외)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
		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부정수표 발행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 요 참 작 사 유	●악의적인 미지급(수표 부도)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허위 신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아 ** ** ** ** ** ** ** ** ** ** ** ** **
일 반	•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 당한 이득의 은폐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참작할 사유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참 작 사 유	● 범행 후 도피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있는 경우(수표 부도) 소극 가담 일부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3. 대부업법 · 채권추심법위반범죄

가. 양형인자표

02 | 채권추심법위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빠 뙘 상	행위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 미한 경우(2유형)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형 인 자	행위 자 <i>/</i> 기 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또는 실질적 	●동종 누범(대부업법위 반죄 포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피해 회복(공탁 포함)	
٥١	행위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소극 가담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자 /기 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 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추가 부분]을 추가함

[추가 부분]

()2 | 채권추심법위반

바.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

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 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사.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2 | 채권추심법위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 요 참 작 사 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경우(2유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파해 화복을 위한 전자한 노력 포함) 또는 실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 반 참 작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 닉한 경우(2유형)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 과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

구분	부정적	긍정적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응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 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4.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馬丁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단순 가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큰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별 양 형 인 자	행위 자 <i>/</i> 기 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개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Ŧ	7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	행위	●소극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 인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반양형인자	행위 자 <i>/</i> 기 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부 피해화복 일반적 수사협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 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라.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총 피해액(총 수신액에서 투자자에 대한 환급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약 2/3 이상의 금액에 관해 투자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거나 투자자의 피해가 회복 또는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추가 부분]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가담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 (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파해 회복된 경우실질적

구분	부정적	긍정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 닉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일반적 수사협조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회복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5. 디지털 성범죄

가. 양형인자표

① 1 이동·청소년성착취물

Ī	7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 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 농아자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	' ' '
	/기타	음)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 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 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 질적인 조치 	범죄 포함)
	행위	• 소극 가담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 우(2유형)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자 /기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좌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기카메라등이용촬영

Ŧ	7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 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용어자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 매범죄 포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실질적인 조치	
	행위	● 소극 가담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 우(3유형)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자 /기 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집행유예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종료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작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F	1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 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Ŧ	7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자 <i>/</i> 기 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 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 매범죄 포함)
	행위	• 소극 가담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자 <i>/</i> 기 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작가 성립하는 경우는 채외)(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4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 미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Ť	1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
	행위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	매범죄 포함)
	자	음)	
	/기타	• 자수	
		• 처벌불원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
	행위		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일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
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양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형	행위	포함)	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
인	자		행 종료 후 10년 미만)
자	/기타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7 7 1 1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
			의) (강요죄 등 다른 범죄
			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5 | 통신매체이용음란

_	7. 肖	プカウス	カスAL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트 별 양 쪙 인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 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자	행위 자 /기타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 매범죄 포함)
일	행위	●소극 가담	
반	행위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
양	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	7분		감경요	소	가중요소
형 인 자	/기타	● 상당한 포함)	피해	회복(공탁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 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 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좌가 성립하는 경우는 재 와)(강요죄 등 다른 범죄 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 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 1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자. 처벌 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

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2 | 카메라등이용촬영

나. 처벌 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추가 부분]

자.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차.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 1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등 종사자의 범행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이상)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 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¹⁾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	
	기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
	이상 전과	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일반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2유형)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참작 사유	• 약물중독, 알콜중독	회복(공탁 포함)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좋지 않음
	시도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	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	• 일반적 수사 협조
	는 경우는 제외)	

○2 카메라등이용촬영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참작	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 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
참작	이상 전과	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

구분	부정적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 (3유형)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 는 경우는 제외)	함)

①3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
	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유가 있는 경우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행한 경우	경우
주요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참작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	시도
사유	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의 집행유예 이상)	•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	
	기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
	이상 전과	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자수
	• 약물중독, 알콜중독	● 진지한 반성
참작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시도	좋지 않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	
	는 경우는 제외)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
		함)

()4 통신매체이용음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돌존 저과(서법진 서매매법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 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